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01 호 2023. 5. 11.(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87회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88회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89회도시계획시설(매곡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90회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 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91회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92회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 9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75회행정대집행 계고서].....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79회도시계획시설(주차장 161회)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1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87호

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119재난대응과)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205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20번지	하천의 명칭	동천
점용 내용	수난안전시설물 설치(경고판, 구명부환)	점용 면적	0.28㎡
점용 기간	2023. 5. 10. ~ 2027.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88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에 따라 확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의회 의결일자 : 2023. 5.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총 계	512,513,900	100.00%	478,572,927	100.00%	33,940,973	7.09%
일반회계	510,193,557	99.55%	476,429,455	99.55%	33,764,102	7.09%
특별회계	2,320,343	0.45%	2,143,472	0.45%	176,871	8.25%
기타특별회계	2,320,343	0.45%	2,143,472	0.45%	176,871	8.2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2,076	0.01%	54,400	0.01%	17,676	32.4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9,767	0.05%	223,072	0.05%	36,695	16.45%
주차장특별회계	1,988,500	0.39%	1,866,000	0.39%	122,500	6.56%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장·관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비교증감	
				기정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총 계		510,193,557	100.00%	476,429,455	100.00%	33,764,102	7.09%
100	지방세수입	89,158,408	17.48%	91,322,408	19.17%	△2,164,000	△2.37%
110	지방세	89,158,408	17.48%	91,322,408	19.17%	△2,164,000	△2.37%
200	세외수입	27,264,852	5.34%	25,501,477	5.35%	1,763,375	6.91%
210	경상적세외수입	20,890,648	4.09%	20,709,673	4.35%	180,975	0.87%
220	임시적세외수입	5,580,422	1.09%	4,002,022	0.84%	1,578,400	39.44%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93,782	0.16%	789,782	0.17%	4,000	0.51%
300	지방교부세	19,350,000	3.79%	18,175,000	3.81%	1,175,000	6.46%
310	지방교부세	19,350,000	3.79%	18,175,000	3.81%	1,175,000	6.46%
400	조정교부금등	62,250,760	12.20%	56,552,760	11.87%	5,698,000	10.08%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62,250,760	12.20%	56,552,760	11.87%	5,698,000	10.08%
500	보조금	282,135,929	55.30%	271,574,810	57.00%	10,561,119	3.89%
510	국고보조금등	184,456,250	36.15%	178,357,033	37.44%	6,099,217	3.42%
520	시·도비보조금등	97,679,679	19.15%	93,217,777	19.57%	4,461,902	4.79%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033,608	5.89%	13,303,000	2.79%	16,730,608	125.77%
710	보전수입등	28,636,941	5.61%	12,000,000	2.52%	16,636,941	138.64%
720	내부거래	1,396,667	0.27%	1,303,000	0.27%	93,667	7.19%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비교증감		
			기정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총 계	510,193,557	100.00%	476,429,455	100.00%	33,764,102	7.09%	
010	일반공공행정	22,276,389	4.37%	21,094,996	4.43%	1,181,393	5.60%
020	공공질서및안전	2,104,201	0.41%	2,020,826	0.42%	83,375	4.13%
050	교육	1,954,761	0.38%	1,909,143	0.40%	45,618	2.39%
060	문화및관광	25,438,099	4.99%	21,808,228	4.58%	3,629,871	16.64%
070	환경	13,724,189	2.69%	13,726,489	2.88%	△2,300	△0.02 %
080	사회복지	259,472,311	50.86%	253,093,344	53.12%	6,378,967	2.52%
090	보건	20,591,697	4.04%	15,699,370	3.30%	4,892,327	31.16%
100	농림해양수산	28,743,475	5.63%	23,918,173	5.02%	4,825,302	20.17%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722,519	0.53%	2,101,788	0.44%	620,731	29.53%
120	교통및물류	13,705,819	2.69%	8,360,747	1.75%	5,345,072	63.93%
140	국토및지역개발	45,567,398	8.93%	41,722,583	8.76%	3,844,815	9.22%
160	예비비	6,665,690	1.31%	4,084,090	0.86%	2,581,600	63.21%
900	기타	67,227,009	13.18%	66,889,678	14.04%	337,331	0.5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89호

도시계획시설(매곡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928-2번지 도시계획시설(매곡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나. 명칭: 도시계획시설(매곡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928-2번지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토지조서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단 위	면 적	편입면적	비 고
울산광역시 북 구 매곡동	928-2	주	m ²	1,263.40	1,263.40	
계					1,263.40	

나. 건물조서

개 요	주차전용 건축물		합 계
	주시설 주차장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면 적	1,115.89	477.51	1,593.40

다. 시설물조서

층 별	건 물 별	건 축 면 적			비 고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합계	
지상 1층		1,115.89	8.32	1,124.21	
지상 2층			469.19	469.19	
계		1,115.89	477.51	1,593.4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윤경호

나.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07, 101동 502호(신정동 월드 메르디앙)

5. 사업기간: 인가일 ~ 2024.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번호	지번 (매곡동)	지목	대장 면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부지	계	성 명	주 소
1	928-2	주	1,263.4	1,263.4	1,263.4	윤경호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07, 101동 502호
계			1,263.4	1,263.4	1,263.4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9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고시내역

협의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기간	점용목적
	성명	주소				
제2023 -2호	동남해안 해상풍력(주)	울산광역시 복구 강동산하4로 21	울산광역시 복구 정자동 정자항 북동 해상	1,293.19	'23. 08. 01. ~ '23. 10. 31.	해상 시추조사 (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예비 지반조사)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91호

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전충배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42(상안동, 쌍용아진그린타운 101동 1304호)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744번지	하천의 명칭	상안천
점용 내용	토지의 점용	점용 면적	64.0m ²
점용 기간	2023. 5. 11. ~ 2027.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9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협의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기간	점용목적
	성명	주소				
제2023 -3호	(주)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코리아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A동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5-1 동측 2.0km~13.0km 전면해상	13,680.01	'23. 05. 11. ~ '23. 11. 10.	울산 해율이 해상풍력(1,2,3) 발전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지반공학적 기초자료 취득을 위한 지반조사 수행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공보 제2023 - 675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3년 4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제5476호로 울산광역시 소유 토지에서 불법경작에 대해 2023년 5월 4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3년 6월 16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연암동 산41-4번지 연암동 산41-6번지 연암동 산41-9번지	경작	해당지번 내 불법경작 일체	불법경작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2023년 5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67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161호)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주차장 161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161호)사업

나. 명 칭 :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56번지

3. 사업개요 : 주차장 조성 64면 (A=1,86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편입토지조서와 같음

7. 열람기간 :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조서

울산광역시 북구

NO	위치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1	송정동	1156	차	1866	1866	울산광역시 북구	
합 계				1,866	1,866		